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춘

편 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 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 화 75-6090

제 482-1 호

1975.1.29

시 보

차 례

◎ 고 시

제 12 호 :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3
제 13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파일부변경및 지적승인.....	3
제 14 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및지적승인.....	4
제 15 호 : " (주차장) "	5
제 16 호 : " (학 교) "	5
제 17 호 : " (시 장) "	6
제 18 호 : 금액표시상품권발행및상환사무취급요령.....	6
제 19 호 : 도시계획시설(공원및도로)지적승인.....	7
제 20 호 : " (도 로) "	7
제 21 호 : 서울특별시사토성분등록고시.....	8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15 호 : 환지계획 (예정지) 일부변경 지정공고	9
제 16 호 :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내환지계획예정지 일부변경공탁공고	9
제 17 호 : 서대문구청 장직인및제인 (수도사업소용) 신조공고	10
제 18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 및 취소공고	11
서울특별시 소방관인사위원회의 공고제 19 호 : 제 1회 소방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시행공고	13
㉡ 사 령	15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2 호

서울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345 호 (74.9.24)
건설부고시제 381 호 (74.11.25)
건설부고시제 198 호 (71.4.7) 로 일
부변경 결정고시된 상업지역에 대
하여 다음과같이 도시계획 용도지
역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가.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도면표시와 감용)

1975. 1. 28.

서울특별시장

단위:㎡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상업지역	영동구회정리사업지구내	2,934,150	
"	신설동-용두동간 청계천북 50㎡도로 변 일부지역	132,400	
"	상동구 군자동, 능동 일부지역	96,660	구회정리사업지구일부포함

별첨: (도면생략) 지적승인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13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과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3 호 (68.1.8) 로 결정된 시설중 일부를 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28.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 m	354 m	수유동 410-96	수유동 518-2	일부구간매지
변경	"	"		"	354 "	" 519-44	" "	
신설	"	"		"	360 "	성산동 30-4	성산동 62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및 도봉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4 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가. 주차장시설조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28.

서울특별시장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주차장 (노의)	우이동 178 의 1 의 1 필지	4,482.5 m ² (1,325 평)	영진교통 및 영신여객주 식회사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도봉구청에 보관함.

<p>○ 서울특별시고시제 15 호</p> <p>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관내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가. 주차장시설조서</p>		<p>제 123 호(73.4.4)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5. 1. 28 서울특별시장</p>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노의주차장	성수동 2 가 234 의 1 의 1 필지	3,785.1㎡(1,147평)	한서교통
"	신월동 265 의 5	851.4㎡(258 평)	신길운수
<p>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출장소)에 보관함.</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6 호</p> <p>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학교)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제</p> <p>가. 시설조서</p>		<p>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5. 1. 28 서울특별시장</p>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학 교	영등포구여의도동 1 - 144	19,800 평	
<p>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영등포구청 보관</p>			

◎ 서울특별시고시제 17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
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가. 시설조서

(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
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 28
서울특별시 장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장	영등포구여의도동 1-892 "ㄱ" "ㄴ"	3,306 ㎡ (1,002 평)	ㄱ. 503평 2 개소 ㄴ. 499평

별첨: 도면표시와 갑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영등포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18 호

금액표시상품권발행및
상환사무취급요령

금액표시상품권발행 및 상환사무취
급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한다.

1975. 1. 29
서울특별시 장

금액표시상품권발행 및 상환요령중
개정요령 제 2 조중 제 7 항 및 제 8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발행신청 및 등록승인) ⑦신
규발행등록을 위한 업소는 비상환
액을 포함하여 자본금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월 1 회
추가발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1
년에 2 회(추석 15 일전과 12 월 15
일기준)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⑧상품권발행등록승인액은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 호</p> <p>도시계획시설(공원및도로)지적승인</p> <p>1. 건설부고시제 198 호 (71.4.7) 및 건설부고시제 414 호 (74.12.30) 로 시설결정된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공원및도로) 을 다음과 같이 지 적승인하였기에 도시계획법제 13 조와</p>		<p>건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 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5.1.30</p> <p>서울특별시장</p>					
<p>가. 공원지적승인조서</p>							
구분	종별	공원명	위치	면적			
신설	근린공원	망원제방공원	제 2 한강교북단 - 망원동제방	24,000 ㎡			
<p>나. 도로지적승인조서</p>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대로	2	20	30 ㎡	9,200 ㎡	합정동	불광동	금반고시
대로	3	97	25 ㎡	4,262 ㎡	성산동 (중 1 - 104)	홍은동 (대 3 - 17)	금반고시 5.10 ㎡
<p>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p>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 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및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종로구관내 도시계획시 설(도로) 결정및지적승인을 도시계 획법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의 규정</p>		<p>과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전관취임사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75.1.30</p> <p>서울특별시장</p>					
<p>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p>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소로	3류	6 ㎡	115 ㎡	새종로 81-4	도림동 104	신설	
<p>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 및 종로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 서울특별시고시제 21 호

분동목을 고시한다.

사료성분 동목 고시

1975.1.31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 9 조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

서울특별시장

분류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 자	사 료			사료성분량			
				종류	명 칭	용 도	최소량		최대량	
							조성비	조지방	조단유	조와분
10-151	한국사료 공사	영등포구 신길동77	정해홍	양제 사료	어린 병아리	0 ~ 6 주	%이상 19.0	%이상 3.0	%이하 6.0	%이하 8.5
10-152	"	"	"	"	중 병 아 리	7 ~ 12 주	16.0	3.0	7.0	9.0
10-153	"	"	"	"	큰병아리전기	13 ~ 16 주	13.0	3.0	7.5	9.0
10-154	"	"	"	"	큰병아리후기	17 ~ 초산	12.0	3.0	7.5	9.0
10-155	"	"	"	"	산 란 초 기	초산 ~ 20 주	15.0	3.0	7.0	13.0
10-156	"	"	"	"	산 란 중 기	21 ~ 35 주	14.5	3.0	7.0	13.0
10-157	"	"	"	"	산 란 말 기	36 주이상	14.0	3.0	7.0	13.0
10-158	"	"	"	"	부로일라전기	4주 까지	19.0	3.0	6.0	6.0
10-159	"	"	"	"	부로일라후기	4 주이상	17.0	3.0	6.0	8.0
10-160	"	"	"	축우용 사료	젖소큰송아지	7 ~ 8 개월	13.0	3.0	10.0	11.0
10-161	"	"	"	"	착 유 1	비유량 20kg이하	13.0	3.0	10.0	11.0
10-162	"	"	"	"	착 유 2	비유량 20kg이상	14.0	3.0	10.0	11.0
10-163	"	"	"	양돈 사료	중체지전기	5~6 개월	14.0	3.0	8.0	10.0
10-164	"	"	"	"	미 임 신 돈	9개월 ~ 임신	12.0	3.0	10.0	10.0
10-165	"	"	"	"	임 신 전 기	임신 2개월까지	13.0	3.0	10.0	10.0

공 고

○서울특별시 공고제 15 호

환지계획 (예정지) 일부변경지정공고

1. 영동지구, 영동제 2 지구 및 영동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계획중 일부환지 예정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제 56 조와 서울특별시 영동지구, 영동제 2 지구 및 영동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변경지정하였기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변경조서 및 도면은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 과와 영동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병람에 공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서류로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5.1.28.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고제 16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 계획예정지 일부 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동, 경인, 역촌, 망우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 및 동법제 55 조와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 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5. 1

서울특별시

공람개요

- 1. 사전명 : 창동, 경인, 역촌, 망우토
지구획정리사업
- 2. 변경지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
동, 공능동, 영등포구, 신
정동, 신원동, 목동, 서대
문구 북가좌동 신사동일
부토지
- 3. 변경필지수 : 30 필지
- 4. 변경조서 및 도면 :
조서 - 별첨
도면 - 별첨 (생략 :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7 호

서대문구청장 직인 및
제인 (수도 업무용) 신조공고

대통령령 제 7531 호 (74.12.31)

에 의거 구직제가 제정되어 수도제
1 과 제 2 과가 신설됨에 따라 수도
업무용으로 서대문구청장 직인 및
제인을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 6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조하였기 서울
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함.

1975. 1.

서울특별시

- 1. 신조직인 및 제인사용일자 :

1975.2.1.00:00

- 2. 공인의 인영

신조직인

제인

폐기직인

제인



◎서울특별시 공고제 18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 지정및취소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1.30.

서울특별시 장

1. 지 정 업체

단위 : \$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5수출목표액
310	동미교역주식회사	방효성	동대문구계기1동435-18	합성수지제품(가방류)	3,750,000
910	주식회사근영상사	부영철	영등포구독산동46-1	외투류,브라우저	1,000,000

2. 지정취소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취소사유
203	명성메리아스공장	이춘명	중구목정동28-10	메리아스내의	장기휴업
205	서울메리아스공업사	김병석	중구을지로5가143	메리아스내의	폐업
211	인선섬유공업사	홍영수	중구방회동2가221	세탁제	폐업
323	백양스팬데스공업사	박해영	동대문구상봉동333-1	스팬데스기물	대기업전환
327	영일화성주식회사	조선훈	동대문구상봉동364-3	인삼차	장기휴업
909	오산실업주식회사	정대실	영등포구고척동76-142	트리코드지물	수출불이행
911	금강주식회사	맹국현	영등포구문래동6가13	용단	타도전출
921	정공사도금공업사	이상덕	영등포구양평동4가15	조립용완구	수출불이행
928	중앙강철공업(주)	박태희	영등포구고척동25-2	자동차부속품	폐업
939	동양석판공업(주)	손열호	영등포구당산동4가93	석도강판	대기업전환
1115	대화경금속공업사	박태희	관악구노량진동114-5	작크, 면테프	타도전출
1122	유림섬유공업(주)	유명석	관악구대방동405-2	양말	타도전출

○서울특별시소방관인사위원회 공고제 19 호

제 1 회 소방원공개경쟁채용시험시행공고

1975년도 시행 제 1 회 소방관(국가 및 지방소방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975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소방관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계급	선발인원	시험과목		비고
		일반소방분야	운전분야	
국가소방원	40	국사 일반상식 일반불티	국사 일반상식 도로교통법	일반소방 25 운전 15
지방소방원	40	"	"	"

※제 1 차 신체검사는 서울시 소재 국립병원장 발행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내 의함. (원서접수시 본인이 반드시 지참할 것)

2. 시험시행일시 및 장소

가. 필기시험

①일시: 75. 2. 23 (日) 10:00
(09:00까지 입장완료)

②장소: 75. 2. 20 (木)
소방본부 계시판에 공고

나. 면접시험

①일시: 75. 3. 8 (土) 10:00
②장소: 필기시험합격자발표시 공고

3.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합격자: 75. 2. 25. 10:00
소방본부계시판에 공고

나. 최종합격자: 75. 3. 11. 10:00
소방본부계시판에 공고

4. 응시자격

가. 75. 3. 8 현재 23세이상 30세미만인자
(1945.3.8~1952.3.8 사이에 출생한자)

나. 지방소방공무원법제 10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자(단 병역 실역의무를 필한자)

다. 학력 및 경력은 제한없음.

라. 신체조건: 신장 165cm 이상
체중 55kg 이상, 흉의 신장의 2/1 이상인자로서 신체 건장한 자

5. 시험방법

제 1 차와 제 2 차를 병합 선택형으로 하고 제 3 차는 면접시험에 의한다.

(단 1, 2 차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 3 차시험에 응할 수 없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75. 2. 10~2. 20
17:30 까지

나. 접수처: 서울특별시(청)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전화 72-3975)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 통: 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 3 매: 응시원서소정란에 첨부

다. 채용신체검사서 1 통: 75. 1. 1 이후 국.공립병원장 발행

라. 병적확인서 1 통: 75. 1. 1 이후 발행한 증명(주민등록초본도 가함)

마. 응시수수료: 500원 상당액의 서울시수입증지출 응시원서 소정란에 첨부

바. 운전면허증사본 1 통: 운전분야 응시자에 한함(접수시 원본대조)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지정기일내에 서울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나. 임용등록을 필한자에 한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원(국가 및 지방소방원)으로 임명하고 보수는 관계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9. 응시구분

가.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지방소방원 또는 국가소방원응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10. 특기사항

가. 건축, 전기, 화공, 기계(통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는 신분상 특례를 부여한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개시 1시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시험감독관의 본인여부 확인 및 기타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 령

◎1975. 1.13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최명선
농업진흥청 전출을 명함.

◎1975. 1.17

지하철본부 지방철도원 7 등 급 장창규
지방철도원 6 등급에 추서함.

◎1975. 1.25

동대문구 지방행정 사무관 (주태과장) 김만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시설관리과 지방행정 서기보 이영철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기 김택진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마포구 지방행정기 유영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새마을지도과 지방행정사 김주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영등포구 지방행정기 유달계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위생연구소 지방보건 (지위해제중) 연구관 김효상
지위해제사유 변경으로 인하여
지위해제 사유를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3 호로
변경함.

<p>도시가스 지방토목 사업소 기사 조종기</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 1, 2호 에 의거 전체에 치함.</p>	<p>지하철본부 공무소장접직을 면함.</p> <p>지하철본부 전차제장 이상훈</p>
<p>개량 2과 지방토목 기사보 이효창</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 1, 2호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지하철본부 차량공작소장 겸 직을 면함.</p> <p>지하철본부 전무제장 조세호</p>
<p>영선과 지방건축 기사보 이평구</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 1, 2호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지하철본부 전력사명장 겸직 을 면함.</p> <p>지하철본부 전역제장 김계권</p>
<p>지하철본부 지방기계 승무원리소 기사 권증수</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 1, 2호에 의거 전체에 치함.</p>	<p>지하철본부 전기소장 겸직을 면함.</p> <p>지하철본부 신호제장 정부만</p>
<p>지하철본부 지방철도원 승무원리소 정지영</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 1, 2호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지하철본부 신호보안소장 겸 직을 면함.</p> <p>지하철본부 통신제장 김홍석</p>
<p>지하철본부 공무원리과 보선제장 남상하</p> <p>© 1975. 1. 29</p>	<p>지하철본부 통신소장 겸직을 면함.</p> <p>© 1975. 2. 1</p> <p>용산구 지방행정 서기보 권옥귀</p>
<p>부산시 전술을 명함.</p> <hr/> <p>서울특별시</p>	